

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김경훈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1370호
- 다. 발의일자 : 2023.10.16
- 라. 회부일자 : 2023.10.23

2. 제 안 사 유

-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~ 제4조)
- 나.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수도법」 제6조

나. 예산 조치 : 별첨 참조

다. 기 타 :

5. 검 토 의 견

가. 개요

-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, 수돗물 절약 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임.

나. 검 토 의 견

- OECD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돗물 사용량은 1인당 일평균 282리터¹⁾를 사용, 세계 3위 수준의 물 사용량으로 향후 2050년에 이르면 물 스트레스 국가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시 등 14개 시·도에서는 수돗물 절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, 서울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<특별·광역시·특별자치시 : 5곳 제정·운영>

구 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-	-	'22.12.30	'20.11.9	'23.2.23	-	'23.4.6	'17.9.29

<도·특별자치도 : 9곳 제정·운영>

구 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'20.7.15	'19.1.4	'23.7.7	'17.9.20	'20.5.29	'20.8.6	'23.7.13	'17.8.3	'17.12.29

1) 2022년 실시한 '서울시 물 사용량 조사'에서는 1인당 일평균 264리터 사용

- 세부적으로 안 제5조(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)에서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은 「수도법」 제6조제1항²⁾에 따른 체계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6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)는 「수도법」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통해 수도물 사용량을 30~40%³⁾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적 지원은 절수설비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.

다만,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등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한편, 서울시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아리수 2.0 중점 사업 중 하나로 2040년까지 42억 7천6백만원을 들여 7만 세대 이상에 절수설비 설치 지원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.

<절수기기 지원 연차별 투자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내용	합계	투 자 계 획				'27~'40년	
		소계	'23	'24	'25		'26
절수기기 설치지원	4,276	2,356	76	760	760	760	1,920

- 2) 제6조(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) ①시·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3) 제1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) ①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<절수기기 지원 연차별 세대수>

(단위 : 세대)

주요사업	추진계획				'27~'40년
	'23	'24	'25	'26	
절수기기 설치지원	1,000	10,000	10,000	10,000	40,000

- 안 제7조(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)는 교육, 홍보, 시민참여 등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교육, 홍보 등을 위한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민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.

- 안 제8조(포상)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과 시민사회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.